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3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2월 15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2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5차 행정위원회(2019. 3. 4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'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'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기능(안 제3조)

-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·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·연구
-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-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·추진
-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- 임원(안 제5조)
 - 회장 1명,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
- 임원 임기(안 제6조)
 -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
- 회의 및 의결(안 제7조)
 - 회의: 정기위원총회,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
 - 의결: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- 분담금(안 제17조):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함
 - 정기부담금: 연 5백만 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서울시 자치구 15개구를 비롯해 전국 77개 지자체가 함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지방행정사례 공유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코자,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.
-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
 - 안 제1조에서는 협의회 명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2조에서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설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서는 회장 한명과 사무총장 한명을 선출하고 권역별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서는 회의운영 절차 및 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3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무국은 회장이 임명한 사무국장 한 명과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5조에서는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16조 및 19조에서는 협의회 재원 및 부담금, 회계연도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0조에서는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감사 실시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21조부터 제22조에서는 협의회 규약개정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검토결과,

- 지방자치 발전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, 지방 공동정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와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지방정부를 구성하고, 구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82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9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2. 제안이유

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발족한 ‘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’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명: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

나. 주요내용

- 기능(안 제3조)

-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·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·연구
-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-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·추진
-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- 임원(안 제5조)

- 회장 1명,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

- 임원 임기(안 제6조)

-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

- 회의 및 의결(제7조)

- 회의: 정기위원총회,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
- 의결: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

- 분담금(제17조):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함
- 정기부담금: 연 5백만 원

4. 참고사항

가. 협의회 규약(안) 전문

나. 참여기관현황: 별첨

다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 ~ 제158조
-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95조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(안)

제1조(명칭) 본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(이하"협의회"라고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약은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주민체감·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·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·연구
2.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
3.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·군·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·추진
4. 그 밖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

제4조(구성) 협의회는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“별표”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,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

제5조(임원)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과 감사 1명,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임원을 둔다.

② 임원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1.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과 사무총장, 사무부총장을 추천한다.

2. 협의회 규모, 권역별 위원 수 등을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.

③ 부회장은 회장 직무를 보좌하고, 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복수의 부회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자 또는 별도로 부회장단이 합의 추대한 권한대행이 차기 회장 선출 시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 운영실무를 총괄하고, 사무부총장은 부회장 및 사무총장의 직무를 보좌한다.

제6조(임원 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부단체장 또는 위원 권한을 위임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부가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, 대리 참석자는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.

제7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, 협의회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위원총회와 임시위원총회, 회장단 회의로 구분하되, 다음 각 호를 의결할 정기위원총회는 상·하반기 1회씩을 반드시 소집하여야 한다. 임시위원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위원 1/5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, 회장단 회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집한다.

1. 회장 및 임원의 선출

2.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

3. 기타 회장단 회의에서 위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

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단 회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안건을 통보하고 서면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.

제8조(회장단 회의)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장단 회의에는 회장 또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임원 및 자문위원을 배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.

제9조(의안의 제출)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안건의 배부)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

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의 청취)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.

제12조(회의결과에 대한 조치) ① 협의회는 모든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,의결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,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③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, 급여는 회장단 회의에서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사무국의 업무)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총회, 회장단회의 등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작성과 관리
2.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무,회계
3.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
4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관리
5. 협의회 목적과 관련한 공동 사업 제안 및 추진
6. 기타 총회 및 회장단회의에서 위임한 사항

제15조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와 협의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총회 또는 회장단회의에서 협의하여 위촉한다.

제16조(재원) 협의회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1. 시.군.구의 정기부담금
2. 특별부담금
3. 기타 수입

제17조(부담금) ① 부담금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한다.

② 부담금은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 특별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협의·결정하고 의결서를 첨부하

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8조(회계연도) 협회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9조(예산 및 결산) ① 협회회의 세입·세출예산은 회장단회의에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.

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③ 협회회의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.

제20조(감사 실시) ① 감사는 매 회계년도말 이전에 예산집행 등 협회회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.

② 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·군·구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대표회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제21조(규약 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22조(운영세칙)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약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용규정)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 운영규정에 따른다.

“별표”

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원 기초지자체 명단

(2018.10.15. 현재)

구 분	회원 기초자치단체명	
계	총 77개	
수도권	서울(15)	종로구, 용산구, 성동구 , 동대문구, 성북구, 강북구, 도봉구, 은평구, 서대문구, 마포구, 양천구 , 강서구, 구로구, 동작구, 관악구
	인천(4)	동구 , 미추홀구, 남동구, 옹진군
	경기(21)	수원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양주시, 과천시, 의왕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오산시 , 화성시 , 시흥시, 군포시, 하남시, 파주시, 여주시, 이천시, 용인시, 안성시, 김포시, 광주시
중부권	대전(4)	동구 , 중구 , 서구, 유성구
	충북(3)	증평군 , 음성군, 괴산군
	충남(6)	공주시, 아산시, 논산시 , 당진시 , 금산군, 부여군
강원(4)		춘천시 , 홍천군 , 양구군, 인제군
영남권	부산(3)	북구 , 연제구, 사상구
	울산(5)	중구, 남구, 동구 , 북구, 울주군
	경북(1)	구미시
	경남(2)	창원시 , 거제시
호남권	광주(3)	동구 , 남구, 북구
	전북(4)	전주시 , 김제시, 완주군, 부안군
	전남(2)	담양군 , 영광군

※진한 글씨가 회장단(임원) 지자체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153조(협의회의 조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54조(협의회의 규약)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
4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5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6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55조(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)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, 의견 개진,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56조(협의사항의 조정)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

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(調整) 요청을 하면 시·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, 시·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·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되는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제157조(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)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.

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95조(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)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광역 계획 및 그 집행, 특수행정수요의 충족, 공공시설의 공동설치, 행정정보의 교환, 행정·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·도로 구성한다.